

企業經營과 資本蓄積에 관한 小考

—資本蓄積의 企業理論을 中心으로—

安 文 宅

<韓國投資開發公社企劃部>

1. 序 說

經濟自立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重要課題로서 심각한 捷托와 論議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이것과 對應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經營自立의 문제도 第3次經濟開發5個年計劃期間中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극히 중대한 課題이다. 우리나라의 經濟自立이 國民經濟의 安定과 發展을 초래함에 필요한 基本的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企業의 經濟自立은 企業經濟의 安定과 發展을 초래하는 기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經濟는 1962년을 기점으로 하여 실시된 經濟開發計劃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이룩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에 반하여 企業經營은 극히 安定을 缺하고, 不健全化하고 있는 근본 원인의 하나는 그 資本的 조건의 惡化에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自己資本의 不足, 自己資本外部調達의 困難 및 自己資本內部蓄積의 困難 등이 그 원인이다.

요컨대 自己資本의 窮乏, 他人資本依存度의 增大(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資本構成은 일반적으로 他人資本 75%, 自己資本 25%의 비율로 되어 있음) 등에 의하여 經營의 自立이 상실되어 왔다고 하는 점에 중대한 원인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他人資本依存度가 큰 기업의 經營이 金融界的 변동에 의하여 현저하게 좌우되고, 經營外部의 金融的 조건에 의하여 經營의 安定이 저해되기

쉬운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며, 또 金融的 窮乏 때문에 經營의 自立性이 상실되는 위험을 包藏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企業의 他人資本依存度가 크면 그 만큼 외부一般經濟界의 변동에 의한 영향이 심각하고, 經濟不況에 의한 打擊도 현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經營外部의 金融界 및 一般經濟界에 의한 영향이 經營의 安定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하는 것은 經營의 他律性을 증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經營의 自立性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企業의 경영은 언제나 外部의 金融界 및 一般經濟界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그 영향의 정도가 他人資本의 과도한 의존에 의하여 經營의 중대 危機를 초래하기 쉽다고 하는 점에, 현재 우리나라 企業經營의 弱體性 즉 經營의 自立性喪失이 현저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企業의 經營自立을 강화하여 經營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自己資本의 外部調達 및 内部蓄積을 용이하게 하고, 이것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는 기업의 財務對策과 국가의 企業資本政策이 相應하여야 바로소 실현될 것이다.

요컨대 企業經營의 自立 문제는 무엇보다도 企業 자체가 내부에 資本을 축적함으로써만 가능하다. 經營의 資本蓄積은 資本家를 위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經營 자신을 위해서 행하여지며, 經營의 基礎確立은 곧 그 生產活動

을 안정하고 확실하게 하며, 우리의 社會的 經濟的 생활에 공헌하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의 企業 내부의 蕙積이야말로, 이 의미에서 社會經濟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당면된 가장 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本稿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課題를 經營學的 입장, 특히 資本蓄積의 企業理論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資本蓄積의 資本家的 利潤追求

資本蓄積이라고 하면 通俗의으로는 흔히 資本家의 利潤追求라든가, 營利的 활동이 연상될 것이다. 資本家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利潤을 축적하고 자본을 저축하는 것을 資本蓄積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蕙積이 어디서 행하여지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생각하여 볼 때, 이 蕙積에는 社會經濟가 資本을 축적하거나 혹은 국가가 財政의으로 축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資本蓄積의 전부를 資本家的 營利性으로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資本蓄積은 전술한 바와 같은 國家나 社會經濟의 축적이 아니고 기업에 있어서의 축적이다. 이 경우의 蕙積이 때로는 資本家的 營利性和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일단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企業에 대한 19世紀의 관념에서 본다면 실제로 기업의 資本蓄積은 企業家 또는 資本家의 資本蓄積에 불과하고, 영리적 利潤追求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代企業觀에 입각하고 또한 현실의 대표적 企業에 대하여 이를 본다면 영리라든가 利潤追求 혹은 資本蓄積 등에 대한 思考方式은 충분히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舊企業觀에 근거한 通俗의 해석으로는 결코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現代적 企業觀에 입각하여 企業 자체의 資本蓄積의 의미를 고찰하려고 하지만, 우선 먼저 現代企業에 있어서의 資本蓄積은 資本家的 축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누구의 또는 무엇을 위한 資本蓄積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明瞭하고 통

일적인 견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혹은 資本家에 가름한 經營者나 管理者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蕙積, 그들을 위한 蕙積이라고 해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서는 現代企業의 蕙積이라고 하는 것은 經營體 자체의 資本蓄積이며, 經營體 자체의 生存과 維持 즉 生活維持를 위한 자기 內容의 충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現代企業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經營者的 출현이라고 하는 사실만은 아니고, 經營體의 獨立化와 그의 自存에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본축적은 特定人的 것은 아니다. 資本家이거나 혹은 經營者이거나 어느 누구도 特定人인 것이며, 그들을 위한 蕙積은 對人的 축적이다. 그러나 經營體 자체의 充實과 自存을 위한 經營蓄積은 經營體라고 하는 生產組織體를 위한 蕙積이며, 그것은 일종의 사회를 위한 蕙積이다. 왜냐하면 經營體는 社會的 책임을 부담하는 社會的 존재이며, 公共的 존재로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資本의 社會經濟的 혹은 國家의 財政上의 蕙積과 여기서 말한 經營體蓄積과는 그 蕙積의 장소와 방법은 일응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의미는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3. 資本蓄積 觀念 및 事實의 銷滅

企業의 類型的 발전의 형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 또는 4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첫째 人的 私企業, 둘째 資本的 私企業, 세째 現代的 私企業, 네째 經營體의 참다운 자세의 네가지 型이 그것이다. 특히 네째型은 존재의 真實의 「姿勢」로서 이념적으로 생각되어질 뿐이며, 현실적으로 이것이 그대로의 형태로 시현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태야말로 現代企業의 활동이 指向하는 목표로 되어 있는 본연의 모습인 것이다. 資本蓄積에 관해서도 이같은 축적의 성격이 蕙積의 자세로서 기대되고 승인되는 것이다. 國家의 蕙積政策으로서나, 경영체의 經營政策으로서도 이 축적의 姿勢가 승인되고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의 蕙積의 방향에 反하는 것은 오히려 승인되지 않는다.

즉 現代企業에서는 세째의 現代企業理論에 입각하여 이 네째의 자세의 방향으로 蓄積策이 추진되고 있으며, 첫째나 둘째의 發展形態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蓄積의 思考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첫째나 둘째의 發展段階의 蓄積의 성격은 종래의 통속적인 思考方式을 유도하는 바, 資本家的營利的 利潤追求로서의 資本蓄積이며, 오히려 「資本家蓄積」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人的私企業觀이나 資本的私企業觀은 기업의 18·9世紀의인 관찰방법이다. 이것은 그 당시를 지배한 企業의 存在方法이었다. 따라서 그때의 특징은 出資者인 資本家가 기업의 전체를 지배하고 經營하는 것이다, 더욱기 그 成果分配도 자기 手中에 지배하고 있는 형이다. 보통의 思考方式에 의하면 企業은 資本家의 「것」이며, 資本家의 「經營」인 것이다, 자본가의 利潤追求를 위해서 활동하며, 企業 결과의 歸屬은 전혀 資本家를 중심으로 하여 決定分配된다. 이러한 思考方式은 人的私企業에는 타당하다.

資本的私企業 즉 初期株式會社에 있어서도 원리는 일응 이와 같다. 그러나 기업이 발전하게 되면 이 같은 資本家的 人的關係는 후퇴한다. 따라서 이에 가름하여 다른 관계가 生成한다. 즉 일면에서는 資本과 經營의 分離가, 타면에서는 經營體의 성립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에 응하여 資本蓄積의 思考方式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이러한 資本과 經營의 분리와 經營體의 성립에 관하여 상세한 논술을 피하고, 다만 극히 간단한 고찰을 함으로써 理解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資本과 經營의 分離論에 관해서는 企業性格論의 과제로서 이미 1920년대를 전후하여 진지한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그 해석은 상당히 多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論爭을 총합적으로 살펴보면 結局 이 分離論은 다음과 같은 2개의 문제를 內包한 2개의 입장에서 고찰하여, 이를 종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資本과 經營의 각각의 측면을 重視하여, 한편에서는 資本과 資本家의 성격 및 資本現象 변화를 주제로 하여 논하는 者와, 다른 한편에서는 經營의側面

을 주제로하여 管理의 獨立, 管理者的 出現, 經營者의 出現, 經營體의 自主的 成立을 설명하는 것을 分離論의 中心과제로 하는 論者の 대립인 것이다.

원래 分離論은 그 일면만 관찰해서는 아니된다. 資本側面과 經營面의 각각을 고찰할 뿐만 아니라 그 상호관계를 문제로 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兩側面의 현상과 성격은 각각 相應符合하는 것이므로 表裡一體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제 資本의 측면에 관해서 보면 資本, 좀더 정확히 말하면 資本出資者는 企業發展型에 있어서의 人的私企業이나 資本的私企業에서는 아직 경영에서 分離되지 않고, 出資者は 바로 經營者 또는 管理者였다. 그러나 現代企業에서는 먼저 서서히 資本分散(Dispersion, Drifusion)의 高度化現象이 일어나고, 또한 出資者 자신의 성격 즉 企業觀이 완전히 변화하여 사업가로서의 資本出資者は 단순한 投資家로 되어 버린다.

이 경우 資本分散은 주식회사의 경우 株式分散 형식으로 표시되지만, 이러한 분산은 그것 자체로서는 아직 아무런 分離도 없는 것이다. 실제로로는 資本出資者が 投資家로 될에 따르는 現象形態인 것이다. 물론 이 현상의 상태가 分離를 촉진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分離의 사실이生成, 發展함에 따라, 그 외부적 현상 형태로서 이러한 分散이 표면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資本家 측면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이제 法制上으로도 승인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英美에 있어서의 株主總會의 權限 내용의 後退,理事會의 決定機關化, Executives의 獨立化 등이 그것이며 우리나라 商法도 이를 승인한 것이다. 요컨대 資本의 경영으로부터의 분리에 의하여 資本出資者は 經營이나 管理로부터 떠나서 投資家의 성격을 가지며, 投資家의 利害에 의하여 경영의 외부에서 利害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 범위내에서 支配하고 制約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와같이 外部의 利害者로 될때 그들 出資者は 金融資本의 投資家나 기타 利害關係者(Interest

Group)와 거의 같은 지위와 같은 관심을 갖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단순히 經營으로부터 받는 配當 기타 收入을 목표로 하는 投資家에 불과하다. 그들은 그 配分에 의하여 스스로의 資本의 蓄積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그들의 資本蓄積은 經營이나 기업의 蓄積과는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資本出資者가 配當을 많이 받아서 보다 많이 축적하려고 하면 配當을 지급하는 經營側에서는 資本의 蓄積이 적게 된다고 하는 관계가 있다. 결국 資本蓄積에는 資本家蓄積이라고 하는 의미 이외에 企業 또는 經營蓄積의 資本蓄積은 물론 後者 즉 經營體의 축적인 것이다. 現代經營에서는 資本家蓄積이라는 別途의 經營體蓄積이 성립하는 것이며 이점에 중요한 성격의 변화와 특징이 있다.

이러한 經營體蓄積에 관해서는 먼저 經營體의 生成을 고찰해야 한다. 資本과 經營의 分離의 다른 일면은 실로 이 經營體의 성립을 말하는 것이다.

4. 經營體의 成立과 資本의 經營體蓄積

資本家가 스스로 경영하는 것을 止揚하여 投資家로 轉化한 것은 스스로 經營할 필요가 없게 된 점과 다시 스스로 경영하지 않는 지위에 서는 편이 보다 有利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즉 그것은 經營活動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관리자가 나타나고 다시 全經營活動을 신임할 수 있는 經營者階層이 출현하여 經營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資本의 分離는 관점은 달리 하면 管理者나 經營者의 生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관계는 相關의이며, 分離現象이 高度化하면 할수록 그만큼 管理者나 經營者層의 生長은 용이하게 된다.

그러나 資本分離와 管理의 成立 또는 管理者의 출현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所有와 管理의 分離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and Management」는 이미 현실의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管理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middle management이다. 따라서 獨逸의 Top management를 포함하는 「經營」, 그것을 담당

하는 經營者의 출현, 즉 資本과 經營의 분리는 管理의 分離보다 한층더 高次元의 상태인 것이다. 이와같은 資本과 經營의 분리에 있어서의 經營體라든가 經營者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여기서 經營者라고 하는 것은 經營體 구성의 기관으로서의 經營者이며, 經營體라고 하는 관념에서 떠난 經營者 개인의 生成을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資本과 經營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經營體」의 成立이며, 단순한 管理者나 經營者의 출현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조직적 活動體인 經營體는 물론 多數의 經營構成員으로 되어 있다. 經營活動의 기능을 分리하는 經營構成員은 각각 經營機能의 담당자이며, 經營擔當者이다.

이안에서 경영의 Top management의 기능을 분담하는 특정의 經營擔當者를 일반적으로 經營者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이 經營者는 經營體의 성립에 수반하는 그 일부 機能擔當者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前述한 企業 또는 經營이 資本蓄積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經營者 개인의 蓄積은 아니고 經營體 자체의 축적이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經營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經營體는 그 목적에 있어서 生產的合理性를 갖는 것이다. 生產이야말로 經營의 주목표이다. 또한 이 生產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能率·經濟性을 고려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經營體의 第一特徵은 生產과 합리성이다.

둘째, 組織面에 있어서 經營體는 機能組織體이며, 주체적인 조직을 가짐과 동시에 또한 책임의 조직체이다. 經營體의 활동은 部分機能으로 나누어지며, 部分機能은 각각 구성원에 의하여 분담되고, 構成員은 이를 주체적, 자주적 獨創性을 가짐과 동시에 책임을 가지고 完遂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째, 經營體는 生活持續體이다. 그것 자체가組織體로서 생명을 가지며, 生存하고, 발전하고, 生장한다. 한개의 生命體로서 이러한 生存과 발전은 經營體 자체의 資本蓄積에 의하여 보증된다. 이러한 生活持續性과 資本蓄積의 관계

는 충분히 주목하여야 한다.

네째, 經營者는 對境關係 속에서 생활한다. 對境關係는 주로 配分利害의 支配制約의 관계이며 이해 관계자의 配分問題로서 配當, 利子, 賃金, 租稅, 價格 등이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이 經營體 자체도 또한 하나의 利害關係者인 것은 중요한 문제점이다. 이 經營體에도 다른 利害者 집단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配分이 행하여져야 하며, 이 經營體 자체의 配分이 자본의 經營體蓄積인 것이다. 이제 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5. 對境關係와 資本蓄積

經營體는 社會的 존재이다. 여기서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經營體의 對境關係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며, 오히려 정확히 말하면 社會의이라고 하기보다는 公共的(public)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우기 경영체는 自主體이다. 自主라고 하는 것은 單獨, 孤立의 自由放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社會的 또는 公共의 인 諸制約과 支配關係의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이나 지배에 대해서만 自主가 있다. 따라서 自主는 실로 制約과 表裡를 이루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經營體를 自主體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이와같이 그것이 社會的, 公共의 諸支配中에 생활하는 관계에 대응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것 자체의 입장은 다른 것과 對境시킴으로써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經營을 지배하고 제약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바, 經營體에 대하여, 최근 Interest Group, Pressure Group 등이라는 用語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 즉 經營體는 그것과 利害關係를 달리하는 많은 利害集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集團과 經營體와의 관계를 바로 「對境關係」라고 해석한다.

對境關係에 있어서의 經營體의 外部支配者에는 우선 첫째로 경영으로부터 분리하는 資本家의 資本支配가 있다. 이러한 資本家의 경영 또는 지배가 內在하는限, 經營의 자주도 없고 자립에 대한 對境도 존재하지 않는다. 分離論은 이와같이 出資資本家의 經營對境化이며, 동시에 經

營體 자체의 自主化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出資資本支配가 對境化하는 것이다, 이것과 서로 對境支配 관계에 서는 것은 債權的 資本支配 또는 金融資本支配이다.

더우기 現代企業의 特性은 勞動組合과의 勞使關係 즉 經營體 自主와 組合支配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이며, 다시 對消費者大衆이 단순한 顧客關係를 넘어 지배적 制約關係로서 經營活動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對政府關係 특히 직접적인 租稅關係, 去來關係 등이 극히 복잡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각각 그들의 利害를 주장하며 經營活動의 自主를 제약한다. 그러나 이 제약은 集團의 이해를 有利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을 지배 제약하는 것이며, 支配나 制約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制約이나 支配를一定程度에 그치게 하거나 혹은 거의 지배하지 않은 편이 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다.

經營을 自主的으로 활동케하여 成績을 올리는 편이 실은 對境利害者에 대하여 유리한 것이다. 自主가 後退하고, 經營成績이 오르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利害를 방위하기 위하여 적극적 支配를 미치게 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는 부득이한 支配이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經營의 성격을 올리고, 自主를 조장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支配에 의하여 經營을 봉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支配 또는 利害라고 하는 경우의 내용에 관하여 보면, 본래의 對境支配는 上述한 바와 같이 利害의 伸張과 방위의 지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利害에 관하여, 경영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그 配分에 대한 것이다. 가령 生產活動을 支配制約한다고 하는 것도 配分에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다. 制約과 支配가 행하여지는 經營配分이라고 하는 것은 經營體의 生產成果를 貨幣價値의으로 표시하여, 이를 경영체에 기여하는 집단에 분배하는 것이다, 利益處分이라고도 해석된다.

그러나 計算上은 아직 이익에 計上되지 않은 Cost도 利益配分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賃金은 勞使關係에서 노동조합의 이해에 대하여

配分을 하는 것이며, 金利는 金融資本에 대한 배분이다. 또 가격은 消費者 대중의 이해적 配分을 조절한다. 따라서 利益處分으로서의 配當까지도 配分인 것이다. 그러므로 配當 및 配當政策 문제와 對境關係에 있어서의 出資者 즉 株主와 經營體의 관계와 그들에 대한 經營配分의 문제를 경영체 자주의 입장에서 본 대책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自己資本出資者는 出資에 의하여 경영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配當을 받는 것이며, 이 배당을 통하여自己資本家의 自己蓄積이 행하여 진다. 資本蓄積이 資本家의 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이와 같은 配當的 배분이나 利子的 배분을 계속한 株主 또는 金融機關에 대해서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분과 축적도 중요함은 물론이다. 이에 의하여 資本調達의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특히 등한히 해서는 아니될 중요한 配分과 蓄積의 과제는 경영체에 대한 배분이며 이는 이른바 自己金融으로서 실로 資本蓄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經營體蓄積이며, 기타 資本家의 축적과 특히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물론이다.

6. 資本의 經營體蓄積

위에서 經營體에 대한 對境關係로서 경영의 自主活動을 제약하는 많은 利害者集團을 고려하였고, 경영체는 이러한 利害者集團으로부터 끊임없이 支配, 또는 制約되었지만, 동시에 경영체가 이러한 支配를 방지하고 또한 제약을 한정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諸集團의 입장으로 浸透하여,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 제약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對境關係는 결코 일방적 관계는 아니고 상호관계이다.

실로 經營體自主의 입장은 다른 諸利害者集團의 이해의 입장과 전혀 대등하며,相互關係의 일방의 입장인 것이다. 换言하면 경영체의自主의 主張도 또한 일개의 利害의 주장이며 經營者도 利害者集團中의 하나인 것이다. 모든 利害者 집단은 각각 자기의 이해의 입장에서 自主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勞使關係에 있어서,

이를 經營體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영의 자주와 이에 대한 勞組의 지배가 없지만, 이 양자는 어느 것이나 대등한 利害者이며, 勞組側을 주체로해서 본다면 노동조합의 自主性과 경영측의支配攻勢가 있다고 하는 관계인 것이다.

이와같이 經營體도 또한 하나의 利害者集團이라고 한다면 모든 集團에 대해서 配分이 문제로 되는 것과 같이, 經營體 자체에 대해서도 配分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영체의 生產成果 또는 收益의 배분은 經營外의 對境的 利害者에게 배분될 뿐만 아니라 經營體 자체에도 당연히 또한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經營體는 그 자체가 社會의 生產을 영위하는 社會責任의 담당체로서 生活持續이 필요한 社會의 존재이지만, 다른 對境利害者와 동등하게 自己生存의 利害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經營體가 올린 收益은 이와같이 外部對境利害 관계자와 經營體 자체에 배분되며, 後자는 일반적으로 社內留保 또는自己金融이라고 한다.

資本蓄積에 관해서 본다면 이상과 같이 社內留保는 명백히 자본축적이지만, 이는 資本家의 축적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經營體 축적인 것이다. 社內留保 또는 社內配分은 모두 資本家에게 직접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으로는 經營體 자체에 속하며, 간접으로는 經營體에 대하여 利害關係를 갖는 全對境者의 이해에 공통하게 유리한 지반이 된다. 장래의 배당 확보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對境利害者 전부의 장래의 配分에 이바지한다. 經營體 자체가 충실히한다는 것은 곧 많은 生產收益을 올려서, 모든 관계자에게 좀더 보다 많은 것을 配分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는 것은 단순히 資本出資者뿐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經營體 축적은 利益分配, 利益處分과 같은 準備金 또는 積立金 형식에 의하여서만이 아니고, Cost 形式으로도 행하여진다. 흔히 秘密積立金이라고 불리우는 減價償却 같은 것도 일종의 經營體蓄積이다.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經營體 축적과 외부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상호의 劢力關係에 따라 配分支配는 변화하고 있다.

經營體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입장은 다른對境主張에 대하여 自主的으로 경영체 축적을 주장하는 것이다. 現代企業에 있어서 문제로 하는企業側의 資本蓄積이라고 하는 것은 經營體 축적의 의미이며, 이미 資本家的 축적이나 利潤的 축적과는 다른 것이다. 여하간 적어도 經營體 축적이라고 하는 성질은 다른 축적과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상의 論述을 요약한다면 經營學의 입장에 입각하여 기업의 資本蓄積을 고찰하

였음을 부언한다.

요컨대 現代企業에 있어서의 資本蓄積의 의미하는 바는 「經營體蓄積」인 것이다.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經營體의 生活持續과 그의 對境의 公共利益를 위한 收益配分의 基礎確立을 위하여 경영체에 대해서 資本蓄積은 극히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는 이와같은 적극적인 자본의 經營體蓄積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近着外國圖書

① セメントコンクリート 1971. 8

- ① 細骨材率がワカビリチーおよび圧縮強度に及ぼす影響, 河野 清, 水口裕之
- ② 東京都における昭和45年度コンクリート検査成績, 渡部繁天, 秋田 實, 村田英一, 田中照久, 本田久一郎
- ③ 昭和45年度セメント共同試験—共通セメント試料による試験結果 宮澤清, 野木孝次, 金子功
- ④ 超早強ボルトランドセメントのコンクリート製品の利用, 斎藤鶴義, 原田理一, 植田 實, 田廣悦司
- ⑤ PC ベネル用ホットコンクリートの性質 開拓する二, 三め実験, 仕入豊利, 地濃茂雄
- ⑥ 凍害をうけたコンクリートの状態—材令50年の水路橋— 中村恵次
- ⑦ セメントコンクリート 1971. 9
- ① 生コン技術者の心構え 服部 重信
- ② 生コンの製品規格と、正しい賣買契約の結び方 —ユーザー側とのトラブルを避けるための問題點をひろって— 友近 久一
- ③ 生コン工場諸規定作成の要點 津田外喜弘, 吉田乙
- ④ 原材料の購買管理と、受け入れ、貯蔵保管、拂い出しについて、島崎 浩介

- 1270
- ⑤ 受け入れ時および工程中における原材料の品質管理の要點, 關口 賢二
 - ⑥ 配合修正および現場配合作成の手順と諸注意 —ポンプ用の場合も含めて— 政村兼一郎
 - ⑦ 材料の計量, 練りませ, およぞ積み込み, 運搬のチェックポイント, 植木 昭雄, 吉兼 亨
 - ⑧ 生コンの出荷管理の要點, 田口 満男
 - ⑨ 出荷コンクリートの品質管理, 長澤 茂夫, 德永直臣
 - ⑩ 生コンの試験上の諸注意 濱田 芳巳
 - ⑪ 寒中における配合, 製造および諸材料の処置と諸注意, 長島 弘
 - ⑫ 暑中コンクリートの問題点と諸材料の処置, 山田政見
 - ⑬ 生コン工場設備の點検・修理の要領, 山下 政嗣
 - ⑭ 生コン工場の洗車および排水設備, 吉兼 亨, 植木 昭雄
 - ⑮ 生コン運搬車ドライバの犯しやすい誤ち —出荷時, 運搬中 現場到着時の心得と, 餘剰生コンの処理など— 米倉 格
 - ⑯ 生コン工場の受けける苦情とその処理 峯山 尚
 - ⑰ [付録] 日本工業規格 レディミクストコンクリート (JIS A 5308)